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명시 등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3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 으로 명시	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 규정	7
3. 긴급지원 내용에 ‘공공임대주택연계’ 추가 등	9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3

I. 개요

1.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6. 7. 30.
-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9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u>
8. · 9. (생략)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일정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¹⁾.

구체적인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에 따른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이며 그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그 기준 중 하나로 ‘가구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가 실제 긴급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중 략)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후 략)

1)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체계에서는 시행규칙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인정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긴급지원 여부가 거주 지역의 조례 제정 여부 또는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져 지역 간 지원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함이 없이 곧바로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규정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전체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6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일부만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3개 지방자치단체(원주시·평창군·의성군)²⁾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자녀양육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복지사각지대로 지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 원주시·평창군·의성군의 긴급복지 관례 조례 규정 현황 >

시·도	시·군·구	현행 조례 내용
강원	원주시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	평창군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경북	의성군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개정안의 의결의 전제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336)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³⁾.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8호에 해당하여 가구의 보호, 양육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거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거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의 내용에 ‘주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⁴⁾,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월세, 하숙, 여관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거지원은 매년 약 1만여건에 이르고 있음.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2022~2026년 연도별 주거지원 건수 >

(단위: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지원건수	12,090	11,751	9,911	8,671	3,568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이러한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거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후에야 숙소를 물색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숙박시설 부족이나 보증금·계약 문제 등으로 신속한 주거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상시부터 임시거소 자원을 발굴·확보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주거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⁵⁾, 이러한 노력 대상에는 임시거소 확보도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긴급지원의 내용 중 하나인 주거지원에 한정하여 임시거소 확보 노력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긴급지원 내용에 ‘공공임대주택연계’ 추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긴급지원의 내용에 ‘공공임대주택연계’, ‘돌봄지원’ 및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나. (생략)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u>비용 지원</u> 라.·마. (생략) <u><신설></u> <u>바.</u> (생략)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u>비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연계</u> 라.·마. (현행과 같음) <u>바. 돌봄지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u> <u>사.</u> (현행 바목과 같음) 2. ----- ----- 가.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등의 사회복지기관·<u>단 체와의 연계 지원</u> 나. (생 략)	----- ----- ----- -단체, 「주거기본법」에 따른 <u>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지원</u> 나.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하 “직접지원”)과 ②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하 “연계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직접지원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

6)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고, 연계지원의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⁷⁾와의 연계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 먼저,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직접지원으로 명시할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위기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직접지원에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가 긴급지원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별도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신청 및 대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지원 근거를 마련할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자신의 주거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주거복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경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행법은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⁹⁾, 이에 따라 제10조에서 지원기간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한정하고 있는데¹⁰⁾,

7)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도시개발공사·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8)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336)도 긴급지원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유사한 취지임.

9)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지원 내용(공공임대주택, 돌봄지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 목적 및 긴급지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에 돌봄·양육 등 신설) 긴급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임시거소 확보 노력 의무와 주거지원에 공공임대주택 연계 추가)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연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으로 수정 필요.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서비스 신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이고, 동 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서비스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간 충돌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497